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684 제출연월일 : 2024. 7. 12.

부

제 출 자:정

제안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하여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그 영업 구역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항만으로 제한되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이 지역별 선 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26조의3제8항 신설)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관 리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이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 확대(안 제26조의3제6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여 영업구역이 해당 항만으로 제한되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업종에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해당 차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을 확대함.

- 다.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안 제26조의3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 1)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공급량보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되도록 정량 공급 의무를 규정함.
 - 2)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 공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업장에 갖 추어 두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량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 나.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 1)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 2)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 3)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 다.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 라.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 서 내가는 행위
- 마. 항만에서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 바. 항만에서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 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 사.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 아.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 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 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 자.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 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 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 차. 항만에서 아목 또는 자목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 카.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

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 라 한다]

- 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 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 파.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 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가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14호"를 "제2조제1항제3호카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항제15호"를 "제2조제1항제3호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1항제16호"를 "제2조제1항제3호파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등록의 신청)"을 "(등록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전단 중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를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를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등록 직권말소,"로, "제23조 및 제26조"를 "제5조제3항·제4항, 제23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본문 중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를 "관리청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항만용역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항만의 관리청
- 2.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항만별 구분 없이 해당 사업을 등록 하려는 관리청

제26조의3제3항 중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

업자"라 한다)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제10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 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 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 2. 제10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 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선박수리업
- 4. 선용품공급업

제26조의3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제10항의 등록 기준 또는 신고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해당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 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제26조의3제10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26조의3에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선박연료 공급량보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범위 이내로 공급(이하 "정량공급"이라 한다)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공급 장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로 측정한 측정결과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하여 정량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여부 및 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⑤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또는 제5호"를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의3제7항"을 "제26조의3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의3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 거나, 측정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제2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의 보관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관한 사항
- 제2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 제31조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의2, 제28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 제2조(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 례) 제26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 박연료공급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

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아 혂 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 제2조(정의) ① -----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 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 선행하거나 후속하는 다음 각 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 목의 행위 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가.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신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 는 일 나.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 (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 (이하 "지정구간"이라 한 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 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 1) 「해운법」에 따른 해상

 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 2) 「해운법」에 따른 해상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 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 송
- 3)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등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 다.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 (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 라.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
 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
 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
 위

- 마. 항만에서 다목 또는 라목 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 서 신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 바. 항만에서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신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행위
- 사.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 아.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 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 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 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 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 자.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 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 가는 행위

차. 항만에서 아목 또는 자목

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 저장소에서 신거나 내리거 나 보관하는 행위

- 카.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신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 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 파.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일[이하 "검량(檢量)"이라한다]

<u><삭 제></u>

<삭 제>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신

 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

 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

 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

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 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 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 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 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 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 송
-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 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 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 <삭 제>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 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에 들여놓는 행위
-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 <삭 제>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 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 <삭 제>

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실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 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

 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

 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여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 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 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보관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

<삭 제>

<삭 제>

<삭 제>

<u><</u>삭_ 제>

<삭 제>

<삭 제>

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 • 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 수(檢數)"라 한다]

-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 📗 <삭 제> 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 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 (鑑定)"이라 한다]
-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 <삭 제>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 ② ~ ⑧ (생 략)
-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 의 행위를 하는 사업)
 -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 의 행위를 하는 사업)
 - 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제5조(등록의 신청) ①・② (생 제5조(등록의 신청 등) ①・② (현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 제3조(사업의 종류) ------
 -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 1. -----제2조제1항제1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부터 차목까지-----
 - 2. -----제2조제1항제3호 카목-----
 - 3. -----제2조제1항제3호
 -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 4. -----제2조제1항제3호 파목----
 - 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 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 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게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u>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u> 권리 ・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u>제</u> <u>23조 및 제26조</u>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 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 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u>항만별・업종별로</u> 해양수산부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관리 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신고하여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1)
카미 () 사기시키
<u>항만운송사업자</u>
 1. ~ 3. (현행과 같음)
1. ∼ 5. (연행과 됱금)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
<u>♦</u>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등록
직권말소,
<u>제</u>
5조제3항·제4항, 제23조 및 제
<u>26圣</u>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관리청에
<u>12 - 10 11</u>

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 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 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 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 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 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

- 1. 항만용역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항만의 관리청 2.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항만별 구분 없이 해당 사업을 등록하려는 관리청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 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

-----.

- ④·⑤ (현행과 같음)
- ⑤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 목을 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서 제10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선(운항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10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선박수리업
- 4. 선용품공급업
- ①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제10 항의 등록 기준 또는 신고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해당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 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 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 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 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

①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 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u>(II)</u> -----

----. <u>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u> 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 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 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 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 하기로 정한 선박연료 공급량보 다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허 용 오차범위를 벗어나 미달되거

<신 설>

<신 설>

<u>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u> 된다.

①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 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범위 이내로 공급(이하 "정 량공급"이라 한다)하는지 여부 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 공급 장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제12항 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기기로 측정한 측정결과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하여 정량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측정기기 설치 여부 및 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에 대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u>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 3. (생략)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 비를 <u>추가하거나 그 밖에</u> 사 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렁으로

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항만운송관련사업자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제2호의2, 제
3호 또는 제5호
<u>0至 工는 제0至</u>
1. (현행과 같음)
1의2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

<신 설>

3. ~ 5. (생략)

② (생략)

제28조의2(보고·검사) ① 관리청 전 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 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사무실, 부선·예선 등의 선박도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보유 장비 및 장부·서류 등을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선

② (생략)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 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 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 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	1
<u>치,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측</u>	<u> </u>
정결과 자료의 보관 및 같은)_
조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이	
관한 사항	_

정결과 자료의 보관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생 략)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
<u>국석유관리원</u>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1. (현행과 같음)
1의2
추가 또는 변경하

거나 -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
연료공급업을 한 자	
<시 설>	

<u><신 설></u> <u>1</u>

1의3.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정량공급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12억원, 급유선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1,000억원, 정량공급 검사·표본조사 등 검사운영비용 연간 10억원 소요
- O 정량공급 제도 도입 시, 선박연료 불법유통(연 3~4.5천억 원, 추정)을 원천 차단하고, 조세 확보(연 약360억원↑, 추정), 벙커링 산업 신뢰도 및 경쟁력 회복 도모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 정량공급 시범사업	12					12	2.4
지출	○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500	500			1000	200
	○정량공급 검사・운영				10	10	20	4
	소 계(A)	12	500	500	10	10	1032	206.4
수입								
	소 계(B)	-	-	-	-	-	-	-
총비	용(A-B)	12	500	500	10	10	1032	206.4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 26 조의 3 (시업의 등록)제11항	■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연 약360억원↑, 추정)
2	제26조의(시업의 등록)제12항	■ 정량공급제도 시범사업 비용 ■ 선박연료공급업자의 '공급량 측정기기' 의무설치 비용 지원
3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제2항 제5호	■ 정량공급 제도 표본조사관련 위탁·운영을 위한 비용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26조의3(시업의	37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등록)제11항	X	조세수입의 비용 측정 불가
0	제26조의3(시압의	0	
2	등록)제12항		
	제29조(권한 등의	0	
3	위임·위탁)제2항제5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정량공급 시범사업) 급유선 4척에(4대 정유사별 각 1척)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여 정량 공급 제도의 실효성 검증 및 불법유통을 야기하는 벙커링 운송료 현실화
-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해 급유선에 '질량유량계'설치 (척 당 2.5억원)가 필요하며 전국의 급유선은 약 400척으로 한시적 비용 총 1,000억원 소요
- (정량공급 검사·운영) 정량검사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7명 전담인력 필요하며 운영 비용 포함 매년 10억원 필요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O (정량공급 시범사업) 12억원('25)
 - * (산출근거) 질량유량계 설치·운영 10억원(4척 x 정량공급측정시스템 1세트(질량유량계 2개 +전산시스템) 2.5억원 x 100%(보조)), 정량공급 효과검증 2억원(1식, 한국석유관리원)
- O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1,000억원('26~'27)
 - * (산출근거) 정량공급측정시스템 1세트(질량유량계 2개+전산시스템, 2.5억원) × 400척 × 100%(보조)
- (정량공급 검사·운영) 10억원('28~) * 정기검사 연간 400건, 수시검사 연간 300건 * (산출근거) 10억원(운영비 5.5억원, 인건비 4.5억원(7명))

Ⅳ. 부대의견

○ 정량공급 제도 도입 시, 선박연료 불법유통(연 3~4.5천억 원, 추정)을 원천 차단하고, 조세 확보(연 약360억원↑, 추정), 벙커링 산업 신뢰도 및 경쟁력 회복 도모

V.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운석	김상현	최문건	이시원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상현	044-200-5773	dr10104@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정량공급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12억원, 급유선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1,000억원, 정량공급 검사·표본조사 등 검사운영비용 연간 10억원 소요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500	500	10	10	1032
〈합 계〉	12	500	500	10	10	1032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O 정량공급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12억원, 급유선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1,000억원, 검사운영비용 연간 10억원은 정부 일반회계로 조달 필요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 중앙정부	12	500	500	10	10	1032
ㅇ 일반회계	12	500	500	10	10	1032
<합계>	12	500	500	10	10	1032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현재 정부 예산안 반영된 사항은 없으며 주무부처와 예산안 반영 협의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해당사항 없음

IV. 부대의견

O 정량공급 제도 도입 시, 선박연료 불법유통(연 3~4.5천억 원, 추정) 원천 차단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 확보(연 약360억원↑, 추정) 고려 필요

V. 협의사항

해당 사항 없음

* 기획재정부와 '23년 '정량공급 시범사업' 예산안 반영 협의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24 '정량공급 시범사업' 재협의, '25년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사업', '정량공급 검사·운영 사업' 협의 계획임

Ⅵ.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운석	김상현	최문건	이시원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상현	044-200-5773	dr10104@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